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23일,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8.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5.9.23.)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5.9.24.)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 의원)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부과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현행법 제43조에 따라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수 있다.

⑥ ~ ⑧ (생략)

<신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시행일: 공포한 날(다만, 제43조의2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에 따른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3조제1항¹⁾에서는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받은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각 부당이득 징수 사유 중 개정안의 제2차 납부의무 요건인 법인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제4호) 및 ②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제5호)가 해당될 수 있음.

- 최근 5년간(2020~2024년)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결손처분액을 살펴보면, 총 759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595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512억 1,700만원(85.97%)을 징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였으며, 법인의 해산 및 청산²⁾, 사업장 폐쇄,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4억 8,3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목적활동을 종료하고 소멸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해산 결의,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 명령, 기타 법률이 정한 사유가 해산 사유가 됨.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을 위해 존속하나 일반적인 영업 행위는 금지되고, 채권 회수,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목적의 활동만 허용됨. 법인의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의미함.

<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

(2025.6월말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결정연도)	기관수	징수결정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759	59,572	51,217	85.97
2024	170	9,744	7,432	76.27
2023	211	18,287	15,780	86.29
2022	162	14,819	12,807	86.42
2021	122	13,122	11,598	88.39
2020	94	3,600	3,600	100

* 주: 징수금액은 해당 결정연도별 징수결정금액에 대한 누적징수금액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결손처분액(사유별 구분) >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결손연도)	계		해산(해산간주)		청산		기타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계	26	483	15	215	3	13	8	255
2024	7	104	3	97	2	7	2	-
2023	9	291	6	100	-	-	3	191
2022	7	84	3	14	1	6	3	64
2021	3	4	3	4	-	-	-	-
2020	-	-	-	-	-	-	-	-

주1: 2020년도 법인대상 결손처분 내역 없음.

주2: '기타'에는 사업장 폐업, 소멸시효 완성 등 포함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이와 같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경우 법인의 무

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2차 납부의무’란 주된 납부의무자의 재산으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주된 납부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의미함.

□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 「국세기본법」 제39조³⁾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4)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사용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법 제11조(5)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3조의2에서는 제2차 납부의무의 주체를 “해당 법인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4)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제2차 납부의무 주체 중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중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를 살펴보면,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상법」 6)에 따라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므로, 한도 없이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며,

‘과점주주’의 경우 안 제43조의2에서 부족한 금액에 그 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에서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또는 출자액)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차 납부의무 주체 범위 및 한도 >

의무 주체	범위	한도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한도 없음
과점주주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개정안은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와 관련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 징수율을 제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상법」에 따라 현재에도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바, 법률에서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 규정하더라도 이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⁷⁾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회사의 보유 주식금액한도 내에서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⁸⁾

□ 둘째,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민법」상 재단법인 또

7)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8) 참고로, 「국세기본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준조세로서 건강보험료 징수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 또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5판, 2024).

는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법인인 장기요양기관 중 비영리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2만 7,716개) 중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영리법인은 1,154개(4.1%)로 파악됨.

<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 >

(단위: 개소)

합계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27,716	23,170(83.6%)	1,154(4.1%)	3,339(12.1%)	53(0.2%)

*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안 제43조의2에서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에서는 무한책임사원(제1호) 및 과점주주(제2호) 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제3호)⁹⁾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인용규정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2024년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20611호, 2024. 12. 31,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제3호에 제2차 납부의무 주체로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을 통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미납한 부당이득금, 연체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 부과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인 해산 등으로 납부의무 회피 시 제2차 납부의무를 통하여 법인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 징수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험재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책임한도를 수정하고, 「국세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43조의2).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 2차 납부의무 책임한도를 수정하고, 「국세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43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3조의2 본문 중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
2.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 ----- ----- ----- ----- ----- ----- ----- ----- ----- ----- ----- ----- ----- -----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 ----- ----- ----- -----.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
외한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
액에 해당 과점주
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
다.

<신 설>

<신 설>

--다음 각 호의 금
액 중 작은 금액--
-----.

1.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
2.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

		<u>는 금액에 해당</u> <u>과점주주가 실질</u> <u>적으로 권리를</u> <u>행사하는 주식</u> <u>수(의결권이 없는</u> <u>주식은 제외한다)</u> <u>또는 출자액을</u> <u>곱하여 산출한</u> <u>금액</u>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로”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

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에 따른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상실, <u>장기요양보험료 등</u> 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 <u>장기요양보험료</u> ”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 ----- ----- ----- ----- ----- <u>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u> (이하 “ <u>장기요양보험료등</u> ”이라 한다)----- ----- -----“ <u>장기요양보험료</u> ”로, “ <u>보험료등</u> ”은 “ <u>장기요양보험료등</u> ”으로----- ----- ----- -----.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
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
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신설>

-장기요양보험료등-----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
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
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
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
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
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
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
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

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